내일의 유괴보도를 생각한다

松本雅彦
신문평론가

가장 자극적인 사건

「유괴라는 첫은 범죄 그 자체의 본질로 보더라도 대개의 경우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용의주도한 계획에서 시작하여 현실적으로 유괴하는 행위에 들어가며 용의주도한 심리적 조작으로 부모들에게 요구조건을 내놓는다. 시간을 끌면서 불안의 고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뉴욕시경 87 분서의 번즈 경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 번즈 경감의 분노에 찬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유괴라는 범죄의 비열함, 흉악함은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유괴사건이 근래에 들어 격증하고 있다. 더구나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건이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 양태도 또한 천차만별, 현저하게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한 특징의 한 ·두개를 예로 들면 우선 범행의 동기, 수법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유괴대상이 유아로부터 젊은 여성, 어른으로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사건이 복수의 시·도·군에 걸쳐 광력범죄화하고 있으면서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는 얼핏보면 단순한 행방불명처럼 생각되는 사건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유괴로 단정되는 케이스도 속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근래의 유괴사건은 단순히 발생건수가 늘어났다는 것 외에도 내용면에서 그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금도 놀랄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괴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사건이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만큼 교묘하고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접하는 매스컴의 사건보도에서 용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스컴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남김없이 모조리 보도하려고 한다. 범죄가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감정의 가장 극적인 표출인 한 그에 관한 뉴스는 우리들 대중의 관심을 끌게 하고 또한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중은 가령 자기자신의 신상에 좋건 나쁘건 간에 변화가 없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려고 하며 범죄뉴스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제멋대로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알맞는 먹이(餌)로서 던져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괴범죄는 그 비일상성과 비극성 때문에 매스컴이나 대중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작금의 유괴사건에서는 사건에 관한 보도 자체가 매스컴과 대중의 쌍방 모두에게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유괴보도협정」이 초래하는 문제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자제하는 한계점

1970 년부터 일본의 매스컴은 유괴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에 관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을 관행으로 해왔다. 신문협회 편집위원회가 정한 「유괴보도의 취급방침」에 준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현지에서 보도의 「자숙협정」을 체결해 왔다. 물른 지금까지의 유괴사건 모두에 대해 이러한 협정이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대사건은 모두가 해결후의 「결과보도」였으며 「경과보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1980 년에 일어난 유휴사건 가운데 하나는 타율적인 원인으로, 다른 하나는 자주적인 의논에 의해 이 관행이 깨어져 사건이 해결되지 많은 상태에서 유괴보도협정이 해제되는 케이스가 생겼다.

전자는 1980 년 3 월 장야에서 일어난 「유미자」씨 유괴살인사건이였으며, 후자는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중인 명고옥의 「조백합」씨 유괴살인사건의 경우이다. 여기까지 이른 경위, 문제점은 후술하겠지만 이 2 개의 사건에 관한 보도의 대응을 계기로 「유괴보도협정」제도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유괴보도의 모양, 취재·보도를 자제하는 협정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비판이 매스컴 내외에서 일제히 돌출한 것 같이 보인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비판과 지적을 검증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유괴사건보도의 실태를 냉정하게 다시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사건과 보도」 혹은 「인간의 생명의 존중과 보도의 자유」, 나아가서는 「인권과 보도」라는 과제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포함하여 장야나 명고옥에서의 사례가 문제되기 이전에 「생명의 안전을 위해 취재·보도를 자제한다」는 관행이 엄밀하게 지켜졌는지의 여부를 묻는다면 아마 매스컴은 그 대답에 난처해질 것이 틀림없다. 사실대로 말하면 보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의논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그것을 해제하기까지 「자제하는」 한계점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의와 분쟁을 되풀이해 왔다는 것이 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괴보도협정」은 보도기관이 수사당국의 제의에 따라 자주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보도협정이지 경찰과의 협정은 아니다. 그러나 그 협정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받음으로써」 처음으로 성립한다. 즉 경찰의 협력이 없으면 이 협정은 바로 무의미해지지 않을 수 없다. 보도의 자주적인 협정이면서 그것이 경찰의 이해와 협력 아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이중구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성립구조의 복잡성과 운용해가는 과정에서의 일상적인 양자의 협력관계가 계속 분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명분상으로나 실태상으로 말하더라도 보도와 경찰은 사건보도의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심한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이 유괴사건이라도 되는 경우 피해자의 구출이라는 공통의 명제 앞에 서로 손을 잡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유괴사건에 조우하는 경우 보도쪽의 일선기자나 수사원의 대부분의 첫 체험인 경우가 많아 익숙하지 못한 보도협정의 운용에 관해서는 더욱 부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보도, 경찰 쌍방에

불만과 초조가 고조되어 협정의 정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트러블이 빈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보도협정」은 보도와 경찰 쌍방의 내부에서 그리고 양자에 걸쳐져서 어떠한 문제를 유발했을까.
사안의 내용은 대충 3 개의 국면에서 포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는 협정의 체결에서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보도와 경찰과의 관계를 보는 국면이다. 이 점에서 보도가 이전부터 일관해서 경찰에 강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협정의 전제가 되는 「경찰측으로부터의 수사상황에 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는 상세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자유롭게 취재될 수 있는 사건을, 손발이 묶여 경찰발표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안타까움과 억울함. 그 「관제발표」를 근거로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불만. 유괴사건의 보도현장에는 연제나 그러한 감정이 진하게 흐르고 있어 그것이 「관제발표」 내용에의 불신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신에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협정제도가 경찰측에 있어 충분하게 철저히 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는 당연히 발표해야 할 정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던 모양이다. 또 최근의 사례를 보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 혹은 용의자와 그 가족 등, 사건관계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정보를 숨긴다든지, 기소 후의 공판유지에 대비하여 피의자 밖에 알 수 없는 사실을 숨긴다든지 하는 행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보도측은 이에 대해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발표하는 것이야 말로 모든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며, 알고 있는 정보를 숨기는 것은 협정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악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경찰에는 경찰의 논리가 있어 「상세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의 수단이나 근거가 될만한 정보를 발표하면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반론한다.
그러나 보도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보도하느냐 않느냐는 판단은 보도기관이 그들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행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협정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수사상황을 속속들이 발표하는 것이 사리」라는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어떻든간에 개개의 사건 관계자의 대응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은 스스로 달라지겠지만 이것이 보도협정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약간 비관적인 견해를 말한다면, 이 문제는 현재의 보도협정제도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붙어다니는 난제라고 생각한다.
협정의 운용을 둘러싸고 보도측과 경찰이 함께 직면하는 분쟁은 그 밖에도 몇가지 더 있다. 해제의 시기, 시간적인 타이밍에 대해서도 자주 양자의 견해가 대립한다. 사건이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된 경우는 그렇다치고 미해결인 채 장기간 협정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주 귀찮다. 장야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보도협정은 길어도 10 일이 채 안된다(1979 년 9 월 성각의 「상유군 유괴살인사건」). 다시 말하면 유괴는 사건발생 후 10 일 전후에 해결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런데 장야의 사건은 발생 후 3 주일이 지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주간신조」가 장기화하고 있는 보도협정의 존재의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주간신조」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 직후 협정을 준수해 온 보도기관이 격렬한

비판을 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3 주일간에 걸친 협정을 해제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과 TV 는 「주간신조」의 보도를 구실로 보도에 들어갔다.

최초의 「판례」

장야사건과 같이 장기화양상을 띠었던 명고옥 사건때에는 협정문 속에 「사건이 장기화될 때에는 1 주일에 한번 협정의 계속문제에 관해 협의한다」는 규정을 두어 실제적으로 1 주일마다 한번씩 경찰의 수사상황을 들으면서 협정의 계속 문제를 협의한 것 같다 현행의 협정제도에서는 해제의 요건으로 「피해자가 보호 또는 발견되 었을 때, 그 밖에 취재·보도에 의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를 들고 있다. 장야, 명고옥의 케이스는 이러한 요건의 어느쪽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명고옥사건에서의 협정해제를 둘러싼 논의도 피해자의 안부가 불명인 채 해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것인 지에 집중됐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그리고 그 판단자료는 수사당국이 제시해야만 한다는 전제 아래 경찰과의 협의를 계속해 온 것 같다.

해제의 발의를 보도측에서 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해야만 할 것인지를 둘러관 책임론을 배경으로 한 문제제기도 그 과정에서 수없이 있었다고 듣고 있는데, 결국 양자간의 의논에 의해 공개수사-협정해제라는 국면을 타개해 왔다. 이에 의해 사건의 미해결 상태에서 보도를 자주적으로 해금한다는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점에서 명고옥의 케이스는 보도측, 경찰이 함께 보도협정의 역사에 한 시기를 획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협정의 운용에 수반되는 양자의 긴장관계 속에서 가끔 트러블이 되는 접점은 또 그 밖에도 있으나 그것들은 일응 현행협정제도를 학습하는 것으로 극복이 가능한 것들 뿐이다. 따라서 뒤에서는 제 2, 제 3 의 국면으로서 보도측과 경찰 각각의 입장에서의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두기로 한다.

북돋우어지는 경쟁의식

보도측의 문제로서 가끔 비판받는 것은 역시, 모처럼 「협정」을 체결하고 취재·보도의 자제를 합의 했으면서도 협정기간중에 그에 저촉되는 행위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인명존중이라는, 이 협정제도가 발족한 당시의 절박한 문제의식이 보도기관안에서 희박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이런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찰의 일선 수사원과 마찬가지로 유괴사건을 처음으로 취재하는 기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도협정의 절차나 그 구체적 운용에 익숙하지 못해 쩔쩔매는 것을 보면 동정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사정은 어느 시대의 어떠한 케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내세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의 뿌리는 깊으며, 그것은 보도 각사간의 치열한 취재경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취재일선에서의 특종경쟁, 타사가 얻어내지 못한 정보를 보다 빨리 입수하려는 경쟁이 취재보도활동을 일체 자제하기로 한 협정하에서 엄연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다. 기자클럽이라는 폐쇄적인 취재기지를 무대로 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거기에는 각사간의 경쟁도 경쟁이거니와 기자들 사이의 특종의식, 공명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경쟁이 신문, 방송 등 협정을 체결하는 기존의

미디어 내부에 머물고 있는 한 유괴보도협정의 정신을 일탈할 우려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다.
장야사건에서 협정의 구속하에 있지 않았던 「주간신조」가 공공연하게 취재활동을 감행, 사건의 내용과 함께 보도협정의 존립의의를 추궁하고 나선 이래 보도각사의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산리에서, 명고옥에서, 주간지미디어들도 신문, 방송과 마찬가지로 협의를 통해 경찰발표를 입수하게 되었고, 각미디어가 협정에 싸인 상황하에서 종전보다 더한 치열한 경쟁의식을 돋구는 환경에 이르렀있다. 이에 덧붙여 사건의 장기화에 수반하여 신문, 방송의 경우 협정의 창구가 되는 기자클럽출입의 기자외에 각사가 응원부대를 내보내 대규모의 취재체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경쟁체제는 당연히 사에 따라 기자에 따라 사건에 밝은 면과 그렇지 많은 면이 나오게 된다. 수사본부에 설치된 경찰의 발표창구는 보도도 보도지만 그 대응체제에 크게 고심한다.

보도협정과 경찰

그러나 보도의 자세 이상으로 심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과거 1년간에 일어난 사례를 들먹일 것도 없이 경찰의 그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논란되어야만 할 점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건 그 자체의 수사와 관련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보도협정과 관련된 점이다. 사건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생략하겠지만 다만 한가지 최근의 사건의 장기화경향은 사건의 의외성, 교묘함도 그렇거니와 발생 직후의 초동수사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고 단언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진행된 사건의 수사에서는 보도측이 자주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방패로 약간 긴장감이 풀린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보도협정의 존재에 의지하여 수사의 지체, 실책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의문을 갖는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두번째의 문제점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발표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결국 경찰이 보도협정을 당국의 자의에 의해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가령 우리들의 우려가 다소라도 현실성이 있고 보도측의 앞서의 지적이 사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문제는 낙관만은 할 수 없다. 유괴사건과 관련된 정보라고는 하지만 틀림없이 보도측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가공된 정보가 당국의 조정 아래 발표되어가고 있다는 기도는 매우 기분 나쁜 인상을 던져주고 있다. 이것은 좀 과장하여 말한다면 우리들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뺏는 경찰국가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경찰관료의 중앙상승지향이나 무사안일주의 혹은 보도를 방해자로 보는 체질 등으로 보아 보도에외 대응은 위에서와 같은 정보조작의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임기응변적인 편의주의가 되기 쉬울 것이다. 보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정운용에 관한 전문인사를 사건때마다 현지에 파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아직 그 제안이 실현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범인과 보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유괴보도협정제도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문제점을 보도의 시점에서 새롭게 관찰해 보면 하나는 1970 년에 신문협회편집위원회가 정한 「유괴보도의 취급방침」의 내용과 이에 근거한 제도 그 자체에 대한 이의였으며, 바꾸어 말하면 방침의 유효성에 의문을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하나는 개개의 사건의 구체적인 협정에 내재하는 과제라고 하겠다. 개별적인 협정의 운용에 수반되는 문제를 일응 괄호 속에 넣고 여기에서는 방침과 제도에 관련한 이의를 막아내기 위해 그 성립의 경과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1970 년의 「방침」은 그로부터 10 년전의 1960 년에 만들어진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생사에 관한 뉴스의 취급은 중대하므로 인질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미리 조사측과 보도측에 협의하여 보도의 취급에 관해 주의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년 동경에서 일어만 「아수군 유괴사건」의 보도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사건의 보도는 범인이 후에 「신문때문에 몹시 놀림을 당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조사의 내용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지금까지 20 여년의 유괴보도의 모양을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말았다. 당시의 범인의 말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보도가 범인의 심리와 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해로운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여하튼 1960 년 당시 보도측과 경찰은 유괴사건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한 끝에 방침을 정리했으나, 그 때 양측이 공통적으로 인식했던 것은 「유괴사건은 길어야 일주간, 짧을 때는 2, 3 일 안에 해결해야 하며 따라서 보도의 자제도 그 기간이 한도」라는 것이었다. 1963 년의 「길전군 유괴살인사건」때의 보도자측도 이러한 인식에 따라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보도협정의 수정을 단행했다.

1970 년의 「방침」 이후에도 사실문제로서 1979 년의 성강사건까지 협정이 체결된 사례는 모두 10 일 이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 장야, 산리, 명고옥 등지에서 1980 년에 잇달아 일어난 유괴사건의 양태가 이상이고 예외적인 것인가, 아니면 장기화의 경향은 불가피하다고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견해는 앞으로의 유괴범죄는 수사능력이 어떻든간에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론이지만 앞에서 예시한 1980 년의 3 건의 보도협정(산리사건의 협정은 15 일째되는 날에 해제)은 모두가 논의의 여지없이 장기화되었었는데, 유휴사건의 역사의 교훈에 따라 한기에 해제가 검토됐어야만 할 케이스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피해자의 안부가 불명인 상황에서 협정해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게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도측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판단을 내려 양식과 절도있는 취재보도를 전개할 용기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 난관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작금의 유괴사건에 있어서 범인이 경찰과 보도측에 범행의 모든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믿고 있는 것은 이미 허구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된다. 초동수사의 단계는 어쨌든 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차라리 보도를 통해서 피해자의 구출에 공헌해야만 되지 않느냐는 소리가 높아도 그것은 조금도 기이하지 않다.

오히려 그 편이 「관제정보」에 근거한 보도를 우리들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보도의 사명에 적합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범죄보도의 구조적인 실태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유괴보도의 방침의 유효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점에서의 것이며 협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파생하는 많은 문제로부터 눈을 돌린 공론이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보도측과 경찰 상호간의 불신감은 뿌리가 깊으며, 또 각각의 내부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는 무수히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괴보도협정은 확실히 「위험한 합의」 위에 성립하고 있다는 감이 없지도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으로부터의 유괴보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현대에 있어서의 범죄보도의 이상적인 형태」라는 명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보도측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일이며, 인권의식·프라이버시의식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지금 도대체 어떠한 형해의 범죄보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 관련자에 대한 경칭문제, 가명으로 할 것인가, 실명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예상수사가 있는 것처럼「예상보도」가 행해지고 있는 실태에도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또 장야사건때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은 부산의 여자고교생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그 관련을 알면서 직접취재하는 식의 보도태도에도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도측과 경찰의 협의가 정리되어 케이스에 따라서는 유괴관련사건의 취재 · 보도도 당해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어쨌든 간에 유괴를 포함하여 범죄보도가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은 결코 일부에서만의 것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원화한 매스컴상황 속에서 그러한 인식이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할 것 같다 신문이 상세한 사실보도를 하면 그것을 받은 주간지가 심층을 파고드는 「배경보도」를 한다 그 위에 이러한 타미디어가 보도한 사실을 TV가 「오락정보화」하는 식의 뉴스의 확대와 증폭보도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 속에 완전히 정착된 것같이 보인다.

「내일의 유괴보도」는 이러한 범죄보도의 구조적인 실태를 근거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논의의 방향은 세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현행방침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 둘째 현행방침을 현대의 사회의식, 매스컴기능에 유의하여 대폭 바꿀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 세째 현행방침은 그대로 두고 운용면에서의 문제해결에 보도측과 경찰이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의 세 방향이다.

어느 경우를 논의하고 어느 경우를 채택하든 간에 용이하게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나, 앞으로 두고 두고 보도측과 경찰 쌍방이 진지하게 검토해가야만 할 과제임에는 틀림 없다.

「유괴보도의 취급방침」과 「유기보도협정의 해설」

<유괴보도의 취급방침>

1960 년 6 월 3 일
사람의 생사에 관한 뉴스의 취급은 중대하므로 인질을 잡고 돈을 요구하는 범죄의 경우는 미리 조사측과 보도측이 의논하여 보도의 취급에 주의한다.

<유괴보도의 취급방침>
1970 년 2 월 5 일
유괴사건 가운데 보도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사는 보도기관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받아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도를 자제하는 협정(가협정도 포함)을 체결한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거나 혹은 보도통제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주의한다.
<부 기>(경제의 양해사항을 포함)

1. 협정체결까지의 절차
(1) 인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유괴사건,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공갈, 불법감금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건)이 발생되 었을 경우에는 투사를 담당하는 경내본부의 책임자(부장 또는 과장)가 당해 경내본부의 기자클럽에 대해 협정의 체결을 제의한다. 이때 경찰당국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협정을 요청하는 이유를 명맥하게 한다.
(2) 제의를 받은 기자클럽은 즉각 가협정을 체결하고, 취재·보도를 보류, 사건을 곧 각 본사편집책임자가 협정의 가부를 판단하여 양해를 얻은 다음, 기자클럽에서 보도(필요에 따라서는 취재도 포함)를 자제하는 각사간협정(본협정)을 체결한다. 가협정은 인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긴급조치이므로 조속하게 본협정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가협정단계에서 인명에 위험이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본협정까지 가지 않고 이를 해제한다.

2. 협정체결중에 있어서의 발표
협정(가협정 포함)이 체결되고 있는 동안 당해 경찰본부의 책임자는 수사의 경과를 상세하게 보도기관에 발표한다.

3. 협정의 해제
(1) 협정은 사건의 피해자가 보호 또는 발견되었을 때, 기타 취재·보도에 의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해제한다.
(2) 해제의 판단은 경찰본부 책임자가 기자클럽간사와 협의하여 행하나, 해제의 시기는 기자클럽이 경찰본부 책임자로부터 그 취지의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 한다.
(3) 사건이 미해결인 채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자클럽의 간사가 경찰본부의 책임자와 협정의 취급에 관해 협의한다. 기자클럽은 그 결과에 따라 각사 편집책임자의 양해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각사간 협정의 연락

협정을 체결한 기자클럽간사는 각사간협정을 주지시키기 위해 협정내용을 공동통신사와 시사통신사를 통해 즉각 전국의 각사에 통보한다.

<「유괴보도협정」해설>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 1976 년 7 월 8 일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는 1970 년 2 월 5 일 유괴보도의 기준으로 「방침」 및 「부기」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유서사건의 보도에서는 전국 각사의 전면적인 협력을 얻어 이를 실천에 옮겨왔다.

그러나 유괴사건의 범죄상태는 극히 다양하여 사건에 따라서는 편집위원회의 보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약간의 이의가 제기되는 케이스도 나왔다. 이는 현행기준이 기본적인 해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으면서 운용의 세부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부족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편집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기준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기준제정 후의 보도관행등도 고려하면서 이 해설을 정리했다.

앞으로의 유괴사친보도에서는 방침 및 부기와 함께 이 해설을 참고할 것을 희망한다.

「유괴보도취급방침」의 정신

이 방침의 기본적인 정신은 피해자의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도의 자유를 자제하는 조치도 부득이하다는 판단에 입각해서 정해진 것이다.

1960 년 내경에서 발생한 아수군 사건에서는 당시 유괴보도에 관한 아무런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제 1 보에서부터 각지는 격심한 경쟁을 벌여 범인의 요구, 수사상황 등이 모두 보도되었다. 불행하게도 아수군은 살해되 었으나, 그후 체포된 범인이 「신문보도로 대단히 몰리는 입장이 되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에 관한 보도는 각사에 심각한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재경사회부장회의를 거쳐 신문협회 편집위원회에 제기되어 금후 유괴사건이 발생한 「유괴보도의 취급방침」과 「유괴보도협정의 해설」경우에는 우선 피해자의 생명을 제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견지에서 현재의 유괴보도기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방침은 대상을 영리유괴사건에 한정하고 보도상의 취급에 대해서는 「조사측과 보도측이 의논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을 뿐, 구체적인 절차등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후 유괴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편집위원회에서는 영리유괴뿐만 아니라 유괴사건 전반에 적합한 새로운 보도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신중히 검토한 끝에. 1970 년 2 월 5 일 현재의 「유괴보도취급방침」 및 「부기」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 방침, 부기는 경시청과도 사친에 충분한 협의를 가져 보도측과 조사측의 양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아수군 사건의 경험을 살려 적어도 보도활동에 의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만은 방지하고 싶다는 편집위원회의 일치된 합의에 의해 마련되게 되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특히 유괴사건에서는 왕왕 발생 당초 단순한 행방불명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친다고 판단되면, 기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즉각 이 「방침」에 따라 대처하기를 바란다.

「보도의 자제」란 무엇인가

유괴보도의 취재방침에는 「유괴사건 가운데 폭로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기관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즉각 그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받아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보도를 자제하는 협정(가협정 포함)을 체결한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거나 보도통제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주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보도를 자제한다」는 것은 취재활동, 보도활동을 보도기관의 자유협정에 의해 억제하는 일인데, 이를 제한하는 방법, 범위 등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건의 성격, 경과 등을 판단하고 피해자 생명의 안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타당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체결되어온 각지의 협정내용을 보면 그 대부분이 일체의 취재보도활동을 보류한다는 자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취재·보도활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실제에 있어서는 아주 곤란하며,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또 취재활동만은 인정하되 보도면의 취급을 보류하는 조치는 인명보호라는 이 협정의 목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도를 자제한다」는 방침은 반드시 취재 ·보도활동을 일체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체 보류한다」는 최대한의 자제조치가 취해져 온 것이 실정이며, 이것이 관례화되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일체를 보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생명보호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이를 위한 협정체결이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협정으로 대처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남용보도통제」에 대한 배려

방침의 말미에 「조사상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거나 보도통제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한다」고 한 것은 이 방침이 피해자의 생명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일탈하여 확대해석되어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도기관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유괴사건 발생의 통보를 받고 협정체결을 요청받더라도 보도측의 독자적 입장에서 보도활동을 행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협정체결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또 수사당국은 협정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며 보도측의 판단자료가 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협정」, 「가협정」

보도협정은 기자클럽단계의 합의가 아니며, 클럽가맹 전사가 각본사 편집간부의 양해를 얻어 체결한다는 것이 협정행위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일관된 방침인데, 유괴보도협정에 대해서도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수사당국으로부터 협정체결의 요청이 있더라도 당해 기자클럽가맹사 가운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다는 확신 아래 반대하는 사가 있으면 협정이 성립되지 많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유괴사건의 취급은 각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대처하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
또 유지보도의 방침에는 「가협정」이 라는 극히 특수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것은 인명을 지킨다는 이 방침의 정신에서 생긴 긴급조치로 편집위원회로서도 유괴사건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가협정」이란 수사당국으로부터 협정체결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 우선 기자클럽의 단계에서 즉각 일체의 취재·보도활동을 보류하는 조치이다. 이 가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동안에 당해 기자클럽가맹사는 각각 각본사의 판단을 구해 전사의 동의가 있으면, 본협정에 이행하게 되는데 본협정이 체결되기까지에는 각본사의 판단, 협정내용의 검토 등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요한다. 무협정상태인 경우에는 그사이에 정보가 새어 나가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가협정」이란 조치로 이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위원회로서는 가협정이 최일선에서의 긴급협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체결 시간은 가급적 짧게 하여 2 시간 내지 3 시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본협정체결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협정 상태에서 수일간을 경과한 사례도 있었으나, 이러한 사태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수사당국이 기자클럽에 대해 「가협정」의 체결을 요청한 예도 있으나 가협정은 어디까지나 보도측의 긴급조치이므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제의가 간다는 것은 「가협정」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데서 오는 결과이다. 수사당국이 기자클럽에 요청해야 하는 것은 「협정」이지 「가협정」이어서는 안된다.

본협정의 내용

본협정이 성립한 경우(혹은 불성립의 경우)「가협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나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① 취재 · 보도활동을 자제하는 범위, ② 협정기간중의 발표에 관한 사항, ③ 협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취재·보도활동의 자제에 관해서는 전기한 바와 같이 「일체 보류한다」는 것이 일응 관행화되어 있으나, 당해 유괴사건의 성격이나 경과에 따라서는 상황에 적합한 제한방법을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생명보호라는 협정의 기본정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유괴사건은 그 범죄양태가 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협정체결시에는 기자클럽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사건의 성격에 적합한 필요사항을 협정 내용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정기간중의 발표

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기간중 수사당국은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보도측에 발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것은 유괴보도에 관한 방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보도기관은 피해자 생명의 안전을 위해 수사당국에 협력하여 원래는 자유로와야 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므로 그간의 수사상황이 상세하게 발표되지 않으면 이 보도협정은 성립될 수 없다.
이 점은 유괴보도의 방침이 결정되있을 당시 편집위원회 대표간사와 경찰청장관간에 엄중히 확인된 바 있으나, 그후에 체결된 각지의 보도협정의 상황을 보면 반드시 발표가 충분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예도 편집처패회에 보고되고 있다.
협정체결을 함에 있어 보도측은 특히 발표에 대해서는 경찰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 쌍방의 완전한 양해 아래 협정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정의 해제

협정의 해제는 유휴보도방침의 「부기」 (1)~(3)에 명기하고 있는 바와 같다. 보도활동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당연히 협정은 해제되는데, 생명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는 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을 때, ② 불행하게도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되었을 때, ③ 범인의 전부가 체포되었을 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해제의 판단은 경찰당국과 보도측의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당국의 판단만으로 그 시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협정을 해제하고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보도기관의 사명이다.
사건이 미해결인 채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협정의 취급에 대해 보도측, 경찰측 쌍방이 다시 취급을 협의할 펄요가 있다는 것표 부기에 밝히고 있는 대로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장기」로 보느냐는 문제는 사건에 따라 그 폭이 다르겠지만, 협정에 의해 보도활동을 보류하는 장기적인 한계는 그 사건의 경과를 봐가면서 적당한 판단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